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http://www.motie.go.kr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4년 12월 2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유법민 산업기술개발과장, 박만희 사무관(044-203-4521)

산업부, 제2차 연구개발(R&D)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 부과
- 20개 기업에 231백만 원, 연구원 6명에게 115백만 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지난 9월 제1차 제재부가금 부과에 이어 이번에 **제2차 제재부가금* 3억 5천만 원을 부과**했다.

*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외에 추가로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100%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

□ 이번에 부과한 제2차 제재부가금은 '12년 이후 '14. 3분기까지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발생한 **28개 연구개발(R&D)과제**로서, **20개 기업에 231백만 원, 연구원 6명에게 115백만 원**이 각각 부과됐다.

○ 산업부는 19일 **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* 심의**를 거쳐 부정사용 28개 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.

* 제재부가금 부과·징수에 대한 공정성과 신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, 산업계, 학계 등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

○ 유형별로 보면 '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'한 사례 21건에 282백만 원이, '허위증빙 처리' 및 '기타 목적 외 사용'한 7건에 64백만 원을 부과했고,

- 금액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24건에 137백만 원,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4건에 209백만 원이다.

<부정사용 유형별 부과 요약>

구분	무단 인출해 회사 경영자금으로 유용	허위증빙 후 연구비 유용	기타 목적외사용
건수 (부과금액)	21건 (282백만 원)	2건 (24백만 원)	5건 (40백만 원)

<기업(개인)별 제재부가금 부과 요약>

부정사용액 규모 (구간별 부과율)	적발과제 건수	기업 (부과금액)	연구원 (부과금액)	면제 (면제액)	합 계
1억 원 미만 (20%)	24건	18개 (125백만 원)	4명 (12백만 원)	2건 (14만 원)	20개 기업 및 연구원 6명, 346백만 원
20억 원 미만 (40%)	4건	2개 (106백만 원)	2명 (103백만 원)	-	

○ 특히 이번에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연구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,

- 산업부는 "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표자에게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."라고 강조했다.

□ 산업부는 「**R&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**」 및 **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**의 일환으로 금년 9월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에 강력 대처 하고 있다. 끝.

※ 붙임: 제재부가금 부과내역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박만희 사무관(☎ 044-203-45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참고] 제재부가금 부과내역

No	부과대상	부정사용 출연금 (천원)	최종 부과율 (%)	감면 여부	제재부가금 부과액 (천원)	부정사용방법	유형별
1	㈜대○○○ (기업)	94,489	20%	-	18,898	13.6월부터 10월까지 41회에 걸쳐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실물확인 불가한 금액 94백만원 부적절한 집행	기타
2	㈜에○○○○○ (기업)	411,523	20%	감면	82,305	12.6월부터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430백만원을 기관 계좌로 이체하여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17회에 걸쳐서 재입금함	회사경영 자금사용
3	네○○○○㈜ (기업)	70,498	20%	-	14,099	12.2월부터'13.3월까지 총3회, 75백만원을 회사렌탈 비용, 보험료, 마이너스통장등의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	회사경영 자금사용
4	㈜알○○ (기업)	49,471	20%	-	9,894	11.12월부터 '12.4월까지 총 4회의 걸쳐 54백만원의 연구재료비를 회사 생산용 재료로 허위 구매	허위증빙
5	㈜영○○○ (기업)	69,557	20%	-	13,911	11.6월부터 '13.8월까지 총 25회의 걸쳐 127백만원을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비 및 재료비로 집행	허위증빙
6	김○○* (개인)	396,666	20%	감면	79,333	11.8월부터 '12.2월까지 총 4회에 걸쳐서 586백만원의 연구비를 무단인출하여 회사경영자금으로 사용하고 7회에 걸쳐 재입금 및 연구개발 재료비로 사용	회사경영 자금사용
7	㈜토○○○○○ (기업)	36,084	20%	-	7,217	13.1월부터 3월까지 총5회에 걸쳐서 76백만원의 연구비를 사무실 임대료, 이사비용 및 회사법인차량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 금액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8	㈜엘○○ (기업)	62,493	20%	일부 감면	9,036	13.1월부터 2월까지 총4회, 74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일부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9	㈜○○○미 (기업)	28,494	20%	-	5,699	12.12월 1회, 48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일부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10	이○○* (개인)	31,788	10%	감면	3,179	12.11월부터 13.3월까지 총9회, 53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7회에 걸쳐서 전액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No	부과대상	부정사용 출연금 (천원)	최종 부과율 (%)	감면 여부	제재부가금 부과액 (천원)	부정사용방법	유형별
11	㈜케○○○○ (기업)	118,312	20%	감면	23,662	13.2월부터 3월까지 총2회, 134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2회에 걸쳐서 전액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12	㈜○○○○오 (기업)	19,129	10%	감면	1,913	12.11월부터 '13.1월까지 총2회, 20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2회에 걸쳐서 전액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13	김○○* (개인)	31,000	20%	일부 감면	3,500	12.12월부터 '13.9월까지 총4회, 31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일부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14	㈜화○○○ (기업)	27,000	20%	-	5,400	12.9월부터 '13.1월까지 총5회, 45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일부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15	배○○* (개인)	118,150	20%	감면	23,630	12.12월부터 '13.2월까지 총2회, 125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2회에 걸쳐서 전액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16	㈜티○○○ (기업)	29,000	20%	-	5,800	11.12월부터 '12.4월까지 총5회, 50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여 사용	회사경영 자금사용
17	전○○* (개인)	11,104	10%	감면	1,110	13.11월부터 '14.1월까지 총8회, 11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3회에 걸쳐 전액 재입금	사업목적 외사용
18	㈜○○○티 (기업)	12,485	20%	일부 감면	1,394	13.8월부터 '14.1월까지 총8회, 13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여 회사운영비로 사용하고 9회에 걸쳐서 전액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19	○○○○스㈜ (기업)	28,794	10%	감면	2,879	13.6월부터 '14.3월까지 총3회, 30백만원의 연구비를 납품업체 및 직원계좌로 이체하여 회사운영비로 사용하고 3회에 걸쳐 전액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20	석○○○○○○㈜ (기업)	2,590	20%	-	518	11.5월부터 '12.1월까지 총5회, 54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여 회사운영비로 사용하고 6회에 걸쳐 전액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21	○○○○○신㈜ (기업)	10,877	10%	감면	1,088	13.1월부터 '13.2월까지 총4회, 16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여 회사운영비로 사용하고 3회에 걸쳐 전액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
No	부과대상	부정사용 출연금 (천원)	최종 부과율 (%)	감면 여부	제재부가금 부과액 (천원)	부정사용방법	유형별
22	지○○㈜ (기업)	80,000	20%	-	16,000	11.11월부터 '12.1월까지 총13회, 91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1회 일부 재입금	사업목적 외사용
23	(주)○○○젼 (기업)	17,498	20%	-	3,500	11.12월 1회, 20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여 사용	사업목적 외사용
24	이○○* (개인)	36,410	10%	감면	3,641	12.7월부터 '13.3월까지 총3회, 36백만원의 연구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여 회사운영비로 사용하고 5회에 걸쳐 전액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25	㈜오○○○ (기업)	39,900	20%	일부 감면	6,992	12.4월 1회, 40백만원의 연구비를 타인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운영비로 사용	회사경영 자금사용
26	㈜빌○○○ (기업)	10,941	10%	감면	1,094	11.10월부터 '12.6월까지 총2회, 112백만원의 연구비를 어음결제 및 인건비로 사용하고 2회에 걸쳐 전액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27	㈜○인 (기업)	1,347	0%	-	면제	13.1월부터 '13.2월까지 총3회, 1백만원의 연구비를 관리비 및 여비, 사무용품비로 사용하고 2회에 걸쳐 전액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28	㈜○○팜 (기업)	4	0%	-	면제	11.6월부터 '11.12월까지 총8회, 142백만원의 연구비를 주관기관 계좌로 이체하여 타용도로 사용	사업목적 외사용
합계	28개 과제	1,845,604	-	-	345,692	-	-

* (____)은 해당기업의 대표자임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